

# 입법정보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02

2026



# 목차

## 01

###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01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02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03

## 02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04
2. 옥천군 식품 사막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 05
3.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06

## 03

###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금의 조례 규율 범위 및 시 차원 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07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08
3. 재난대피 및 강제대피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경상남도 거창군) 09

## 04

### 국외 입법례

-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규정 10



## 1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24. |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제정

## 제정이유

-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의료의 질 저하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입학 단계부터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의의 지역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하고,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면허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근무 완료 시 공공의료기관 등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복무형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5 |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고, 신청주의로 운영되던 자율방범연합회의 중복 설립 문제로 발생하던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공익적 역할과 기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별 시·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군·구별 자율방범연합대는 각각 1개 조직만 설립하도록 하여 중복 설립을 제한함.
- 다만, 시·도에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
-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연합회 및 연합대는 개정 규정에 맞도록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을 조정하도록 함.



## 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5 |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라 전단지 등 광고물은 허가·신고 및 내용 규제를 받고 있으나, 불법 전단에 대한 집중단속이 종료되면 배포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불법 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불법 전단지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로 일정한 간격의 전화를 발신하여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위반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지 시킴으로써, 단속 위주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물 배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1

#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20 | 충청남도조례 제6096호, 2026. 2. 20., 제정

### 제정이유

- 충청남도로 이주하려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청남도로 이주하려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인구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외동포의 개념을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규정하고, 충청남도로 이주하거나 도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함.
- 도지사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함.
- 이주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주민과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기관·단체에 비용 보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기관·단체·대학·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관계법령

- 「재외동포기본법」

### 시·도별 현황

- 경기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 2

##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

시행 2026. 2. 10 |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422호, 2026. 2. 10., 제정

### 제정이유

-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식료품 점포가 부족한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마을에서는 식품 접근성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 사막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식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식품 사막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 및 건강권 보호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
-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사막화 실태조사 및 지역 설정, 기본 목표·추진방향, 자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이동형 판매 시스템 운영, 차량 구입 지원, 지역 협동조합·소규모 상점 지원 등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
-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도별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3

##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 2. 13 | 대전광역시조례 제6599호, 2026. 2. 13., 제정

### 제정이유

-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이거나, 불법 주·정차와 협소 도로 등으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긴급차량의 출동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긴급차량’과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함.
-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 개선 방안, 소방시설 설치·관리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관리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도로환경 개선, 안전표지 설치, 주민 소방안전 교육 및 길 터주기 훈련 등 출동환경 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함.
- 교통정책 수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
-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 1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금의 조례 규율 범위 및 시 차원 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의견26-004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질의요지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태백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별도로, 태백시 차원의 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성과분석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태백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을 활용한 사업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도 조례와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배분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태백시 차원의 자문·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도 소속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심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성과분석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 심의·의결권을 보조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음.



## 2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의견26-004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질의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정선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버스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예방·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재해대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공영버스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역 실정에 따라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관련 법령과 충돌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3 재난 대피 및 강제대피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의견26-0052] 경상남도 거창군

### 질의요지

- 거창군에서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를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지방자치법」 상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다만,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와 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저촉되거나 이를 초과하는 내용은 둘 수 없음.
- 대피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6-2호] (2026. 2. 3.)

- EU는 역내 배출권거래제(ETS)와의 형평성 확보 및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함.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임. 2025년 10월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
- 개정 내용의 핵심은 기업 부담 완화와 절차 합리화임. 연간 50톤 이하 수입기업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도입, 인증서 판매·제출 일정 연기, 분기별 보유 비율을 80%에서 50%로 완화함.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값 산정 기준을 조정함. 기지불 탄소 비용 차감 절차를 구체화하고, 과징금은 고의·과실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감경 가능하도록 보완함. 등록부 접근 범위를 확대해 검증 및 데이터 관리 효율성도 강화함.
- 이번 개정은 환경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행정 실효성과 기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 탄소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주요 수출 품목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내 ETS와 EU 제도 간 정합성 확보, 탄소 가격 인정 체계 마련, 배출량 검증 기반 구축이 필요함. 향후 유사 제도 도입 시 EU의 단계적 시행 및 전환기간 운영 경험은 중요한 입법 참고 사례가 될 것임.

## 입법정보란?

법률 제정·개정 동향,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 확인

- 법제처 | <https://bit.ly/4tPEaBq>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bit.ly/46kTUCr>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7